



## 미국의 협력적 산림관리 지원법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정보신청기관 :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I. 머리말

미국산림청(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USDA Forest Service; 이하 USFS)이 연방에 속하지 않은 산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계획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 산림청(State forester) 등의 관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협력적 산림관리 지원법(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1978)」은 「다용도, 제한산출법 (Multiple Use Sustained Yield Act, 1960)」, 「국유림 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NFMA, 1976)」, 「국립 환경 정책 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1969)」, 「산림 및 초지의 재생가능한 자원 계획법(Forest and Rangelands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1974)」등과 함께 USFS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법제들 중 하나로,<sup>1)</sup> 국유림 이외의 주정부 혹은 사유지에 대한 USFS의 역할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협력적 산림관리 지원법(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II. 「협력적 산림관리 지원법」의 연혁

1974년 제정된 「산림 및 초지의 재생가능한 자원 계획법(Forest and Rangelands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1974)」에 의한 정책 방향을 보충하기 위하여, 1978년 7월 1일 「협력적 산림관리 지원법」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sup>2)</sup>



1) USFS 및 관련법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Wikipedia contributors, "United States Forest Servic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ndex.php?title=United\\_States\\_Forest\\_Service&oldid=230768090](http://en.wikipedia.org/w/index.php?title=United_States_Forest_Service&oldid=230768090) (accessed September 5, 2008)을 참조.

의회는 (1) 미국 대부분의 생산적인 산림지대는 사유지이거나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재생가능한 산림자원의 생산능력은 주로 이러한 비연방의 산림지대(non-Federal forest lands)에 의존하고 있고, (2) 미국에 필수적인 목재와 다른 산림자원의 적절한 공급은 나무의 심고, 가꾸고, 벌목하는 효율적인 방법과,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에 관한 효율적인 방법에 의존하며, (3) 산림지대는 어류나 야생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또한 심미적 기능과, 야외활동의 기회, 그리고 다른 산림 자원 등을 제공하며, (4) 나무를 해치는 해충과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종종 연방정부와 비연방정부의 토지 관리자들과의 협동을 필요로 하고, (5) 산불 예방에 있어서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력이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으며, (6) 나무와 숲은 도시 지역에서도 훌륭한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7)

관리되고 있는 산림은 사회에 커다란 이익이 되는 수자원공급의 질과 양, 공급시기조절을 개선하는데 공헌함을 선언하면서, 농무부장관(the Secretary of Agriculture)으로 하여금 비연방 산림지대와 관련하여 (1) 산림 자원 관리의 향상, (2) 목재 생산의 장려, (3) 나무 및 숲을 해치는 해충과 질병의 방지와 관리, (4) 시골의 화재의 방지와 관리, (5) 목질 섬유(wood fiber)의 재활용을 포함하는, 목재 및 목재 잔여물의 효율적인 활용, (6) 어류와 야생동물 서식지의 개선 및 보존, (7) 도시숲관리 계획의 입안과 실행을 지원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아울러 농무부장관이 비연방 산림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 산림청등의 관청들과 협력하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당시의 법조문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Section 2. Policy and Purpose (정책과 목표)

Section 3. Rural forestry assistance (지방의 산림관리 지원)

Section 4. Forestry Incentives (산림관리 유인책)

Section 5. Insect and Disease Control (해충 및 질병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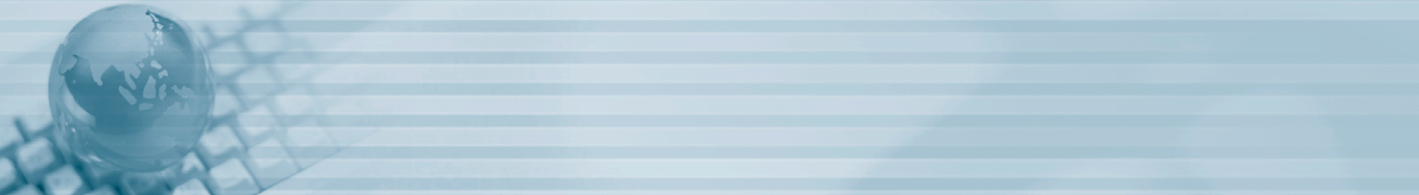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Section 6. Urban Forestry Assistance (도시의 산림관리 지원)

Section 7. Ru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지방의 화재 방지 및 관리)

Section 8. Management Assistance, Planning Assistance, and Technological Implemen-



2) PL 95-313, 1978 HR 11777.



tation (관리 지원, 계획지원 및 기술 제공)

Section 9. Consolidation of payments (통합 보상 체계)

Section 10. General provisions (일반 규정)

Section 11. Statement of limitation (제한 규정)

Section 12. Reports (보고)

Section 13. Repeal of other laws; Existing contracts and agreements; Appropriations (타 법률의 폐지, 기존의 계약 및 협정, 충당금)

Section 14. Effective Date (효력발생일)

이 후 1990년, 1991년, 1992년, 1996년 등에 일부가 개정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8년에 있었다.

16편 “보존(Title 16. Conservation)”의 제41장이 “협력적 산림관리지원(CHAPTER 41.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이라는 제목을 갖게 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의 확정 에 있어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Ⅲ. 현행 「협력적 산림관리 지원법」

#### 1. 구성

「협력적 산림관리 지원법」은 1978년의 제정 이후 다수의 개정을 거치면서 다소간 조문의 추가와 삭제 및 수정과정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 연방 법령집(United States Code)상의 제

여기에서는 산림청이 발간한 ‘산림청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선집(Selected Laws Affecting Forest Service Activities; 이하 SLFS)’<sup>3)</sup>상의 「1978년의 협력적 산림관리 지원법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of 1978; 이하 「CFAA」)」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SLFS 상의 「1978년의 협력적 산림관리 지원법」의 구조〉<sup>4)</sup>

| Section   | 제 목   | 비 고 (16 U.S.C.) |
|-----------|---|-----------------|
| Section 2 | Findings, purpose, and policy (선언, 목적, 정책)  | § 2101          |
|           | State-Wide Assessment and Strategies for Forest Resources (산림 자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평가 및 전략) | § 2101a         |
| Section 3 | Rural forestry assistance (지방의 산림관리 지원)   | § 2102          |
| Section 4 | Forest land enhancement program (산림지대 강화 계획)  | § 2103          |
| Section 5 | Forest Stewardship Program (산림 관리책무 프로그램)   | § 2103a         |

|             |   |             |
|-------------|---|-------------|
|             | Watershed forestry assistance program (수변 산림관리 지원 계획)   | § 2103b     |
| Section 7   | Forest Legacy Program (산림 유산(遺産) 계획)  | § 2103c     |
|             | Community Forest and Open Space Conservation Program (공유림과 공지 보존 계획)  | § 2103d     |
| Section 8   | Forest health protection (산림 건강 보호)   | § 2104      |
|             | Pest and disease revolving loan fund (전염병 및 질병대비 회전식 대출 기금)   | § 2104a     |
| Section 9   | Urban and community forestry assistance (도시림 및 공유림 관리 지원)   | § 2105      |
| Section 10  | Ru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지방의 화재 방지 및 관리)  | § 2106      |
|             | Emergency reforestation assistance (긴급 재식림 지원)  | § 2106a     |
|             | Use of money collected from States for fire suppression assistance (화재 진압 지원을 위해 각 주들로부터 모은 자금의 사용)                       | § 2106b     |
| Section 10A | Enhanced community fire protection (강화된 공동체 화재 방지)  | § 2106c     |
| Section 11  | Financial, technical, and related assistance to States (주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및 관련된 지원)  | § 2107      |
| Section 12  | Consolidation of payments (통합 지급 체계)  | § 2108      |
| Section 13  | General provisions (일반 규정)  | § 2109      |
|             | Competitive allocation of funds to State foresters or equivalent State officials (주 산림감독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주 관료에 대한 자금의 경쟁적 배분) | § 2109a     |
|             | Competitive allocation of funds for Cooperative Forest Innovation Partnership projects (협력적 산림 개선 제휴 계획을 위한 자금의 경쟁적 배분)   | § 2109b     |
| Section 14  | Statement of limitation (제한 규정)   | § 2110      |
| Section 15  | Budget request by President for Forest Service activities (산림청의 활동을 위한 대통령의 예산 요청)  | § 1606      |
| Section 16  | Other Federal programs (기타 연방 계획)   | § 2111      |
| Section 17  | Effective Date (효력발생일)  | § 2102 note |
| Section 18  | Cooperative national forest products marketing program (협력적 국유림 산물 판매 계획)   | § 2112      |
| Section 19  | Federal, State, and loc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연방, 주 및 지역적 조화와 협력)   | § 2113      |
| Section 20  | Administration (행정 조항)  | § 2114      |



- 이 자료는 산림청의 활동과 관련된 법제들의 개관이 주목적인 까닭에 공법(public law) 분야의 법령만을 담고 있어서 산림관련법에 대한 완전한 법령의 목록이라 할 수는 없으나, 산림청의 활동에 적용되는 '현재의 주요한(current major laws)' 법령들의 목록과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2004년 간행된 제4판이 최신판이다. 이 자료의 전문은 <http://www.fs.fed.us/publications/laws/selected-laws.pdf> (2008-10-0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표의 작성에 있어서는 비교 및 참조를 위해서 미국연방법령집 제16편 제41장의 내용들도 함께 병기하였다. 'Section x' 표시가 있는 조항은 SLFS상의 『CFAA』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이고, 'Section x' 가 없는 조항은 미국연방법령집에만 있는 조항이다. 특히 할만한 조항은 'section 15' 로 이 조항은 U.S.C. 제16편의 제36장 '산림과 초지의 재생가능한 자원 계획(Chapter 36.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에 속해 있다.



## 2. 주요내용

「CFAA」는 농무부장관에게 비연방 산림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략 9개의 협력적 산림관리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각 주의 산림관리청과의 협력 하에 수행할 권한을 부여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 법의 제정 및 운영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선언사항들과 목적조항,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의 순서로 살펴본다.

### 1) 선언

제정 이후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의회는 제정 당시의 선언사항에 더하여, (1) 미국의 목재공급의 거의 1/2 가량이 비산업적 사유 산림지대에서 생산되며, 그 비율이 확장된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증가할 수 있음, (2) 사적으로 보유된 산림 자원들에 대한 적절한 산림관리책무(stewardship)를 통해 미국의 토지, 수자원 및 대기의 질이 보존 혹은 향상될 수 있음, (3) 미국의 산림지의 1/2 이상이 보존 조치의 필요성이 있음, (4) 산림의 소유자가 개발 혹은 다른 목적으로 그들의 산림지대를 변경하고자 하는 점증하는 욕구에 직면하고 있음, (5) 어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 심미적 차원 및 여가활용의 기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산물 및 서비스에 대한 점증하는 인구 및 수요자의 요구가 공공지대뿐만 아니라 사적인 토지보유자에게도 가해짐, (6) 장기적인 실행이 요구되는, 사적으로 보유된 산림 자원들에 대한 적절한 산림관리책무가 지방, 주, 연방정부의 행위에 의해 신장될 수 있음, (7) 농무부가 다른 연

방기관, 주 산림청, 및 주의 정치기구들과의 협력하의 산림관리를 위한 조화된 노력을 통해서, 사적 토지보유자들이 산림과 관련한 개인적 목표와 공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8) 비산업적 사유 산림지대의 관리책무로부터 생겨나는 산물과 서비스가 시골의 공동체들의 경제적 향상과 다양화에 공헌할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해 줌, (9) 반건조기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임업 체제 및 목재양성이 기후조건의 향상과 농산물 및 소득을 유지시켜줄 수 있음, (10) 미국내에 존재하는 산림자원의 공급, 보호 및 보존과 관련한 문제들이 동일하게 국제적인 차원에도 존재하며, 세계의 산림 및 초지의 재생가능한 자원들이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벌채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간의 법제 운용의 결과 구체화된 상황 인식 및 사회심리학적 고려가 반영되고, 아울러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산림관리의 중요성의 인식이 추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 목적조항

이렇게 확장된 상황인식에 맞추어 목적조항 역시 농무부장관에게 미국내의 비연방 산림지대와 외국내의 산림지대<sup>5)</sup>와 관련하여, (1) 비연방의 산림지대의 관리를 위한 조화롭고 협력적인 연방, 주, 및 지방의 산림 관리책무 프로그램의 설립, (2) 목재 생산의 장려, (3) 나무 및 숲을 해치는 해충과 질병의 방지와 관리, (4) 시골의 화재의 방지와 관리, (5) 목질 섬유(wood fiber)의

재활용을 포함하는, 목재 및 목재 잔여물의 효율적인 활용, (6) 어류와 야생동물 서식지의 개선 및 보존, (7) 도시숲관리 프로그램의 입안과 실행, (8) 토지보유자들의 다양한 사용목적을 환경친화적 방법을 통하여 충족시키기 위한 비연방 산림지대에 대한 산림관리, 화재 예방, 해충 및 질병의 예방 프로그램의 확장, (9) 사적 토지보유자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가치있거나 환경적으로 위태로운 비연방 산림 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기회의 제공, (10) 미국내 비연방정부의 산림지 소유자들 및 외국의 산림지역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인 보조 프로그램의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농무부 장관이 비연방 산림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 주 산림청 등의 기관, 비정부기구(NGO) 및 사적 부문과의 협력하에 수행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것을 의회의 정책사항으로 규정하였다.

### 3) 주요 프로그램

이하에서는 주요한 프로그램 규정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기로 한다.

우선 지방의 산림관리 지원(Rural forestry assistance)을 위해서 법은 농무부장관에게 사적 산림 보유자들과 관리자, 판매자, 산림자원 관리

자 및 전문가, 공공 기관 및 개인들이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주 산림청 등의 관청과 주의 확장감독관들(State extension directors)이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교육적 지원 및 그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목적에는 산림지대의 보호와 복구, 야생동물과 어류의 종과 그들의 서식지에 대한 파악·보호·개선, 산림 관리 기술들의 실행, 산림작물과 임산품간의 선택·생산·판촉, 산불, 벌레, 질병과 날씨에 의한 피해로부터의 산림지 보호, 도시와 주거지역 근처의 산림 자원의 사용의 균형을 위한 토지 관리, 여가활동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산림지의 심미적인 기능의 보호, 산림지의 다른 사용으로의 전환으로부터의 보호, 산림지의 자원 관리가 이에 속한다. 그 밖에도 유전적으로 향상된 나무종자를 개발하고, 넓은 식물원, 온실과 종묘장의 개발, 나무종자와 묘목들의 조달, 생산과 배포, 그리고 나무종자와 묘목을 비 연방의 산림지에 심고, 나무들, 어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의 질과 양의 향상, 토양의 비옥성을 보호,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및 그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정 당시의 산림관리의 유인책 프로그램(Forestry Incentives Program)은 산림지대



5) 원문에 의하면 “with respect to non-Federal forest land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st lands in foreign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라 하여, “외국내의 미국 보유 산림지대”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of the United States’ 부분에 대하여 ‘원문대로(So in original)’ 라는 주석이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미국 보유라는 부분을 삭제한 채 번역하였다.



강화 계획(Forest land enhancement program)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상의 변화라기 보다는 현대적 맥락에서의 세부적 보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 산림청에 재정적 보조를 지원하고, 주 산림청으로 하여금 연방 및 사적 영역의 자원 관리 기법 재정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비산업적 사유 산림 지대의 보유자들이 보다 활동적으로 산림지대 및 관련 자원을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미국 내의 비산업적 사유 산림지대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1000에이커 이내의 - 상당한 공공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5000에이커 이상에 대해서도 - 토지소유자들의 개발비용을 지원해 주어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산림 관리책무 프로그램(Forest Stewardship Program)은 농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주 산림청 등의 관청들로부터의 자문을 얻어, 연방, 주, 그리고 개인적인 관리 기술과 보조 프로그램의 활용에 의하여 비산업적인 사유의 산림지대의 장기적인 관리를 장려하는 산림 관리책무 프로그램을 제정하여야 한다. 농무부장관은 목재, 어류와 야생 서식지, 수질, 늪지, 야외활동을 위한 자원, 그리고 산림지의 심미적인 가치의 생산성에 대한 관리와 강화와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보호, 유지, 강화를 실행하기 위한 투자, 실무를 통한 산림 자원의 장기적인 생산성의 확립과 환경적 이익의 보호, 그리고 산불, 벌레, 질병과 기상에 의한 피해로부터의 산림 보호 등과 관련하여 토

지보유자들이 취해야 할 선택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재정적, 기술적, 교육적 지원 및 관련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산림 유산 계획(Forest Legacy Program)은 1990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서 보존에 따르는 부담의 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산림지대의 보호 및 그 밖의 보존 기회들을 조장하고, 중요한 경관, 문화적, 야생동물 및 여가 자원, 호수지역 및 기타의 생태적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무부장관이 비산림지대로의 변경의 위협을 받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산림지대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농무부장관은 의회의 승인 하에 이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을 주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

산림 건강 보호(Forest Health Protection)는 농무부장관에게 자연재해와 인간의 위협들로부터 미국의 국가 산림 시스템의 토지와 다른 토지들의 나무, 숲, 목재 생산과 저장된 목재의 보호를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도시림 및 공유림 지원(Urban and Community Forestry Assistance)은 도시와 공유림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회는 농무부장관이 재정적, 기술적, 그리고 그와 관련한 보조를 하여 주정부들이 도시 산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다양한 도시 지역에 나무를 사용하도록 하는 협력적인 노력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시골의 화재 방지와 관리(Ru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는 지방의 산불 예방과 그 관리의 중요성을 기술하면서, 의회는 농무부장관

이 주의 산림 전문가들 또는 그와 동등한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시골과 그 지역 공동체의 산불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재정적, 기술적, 그리고 그와 관련한 보조를 하여 산불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주에 대한 보조(Assistance to States)는 이 법의 프로그램들이 최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는 농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연방의 산림지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그들의 책임을 보다 잘 이행할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 조직들을 개발하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및 그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한다. 농무부장관의 지원은 조직의 관리, 프로그램 계획, 예산과 재정적 서비스들, 개인적인 훈련과 관리, 정보 서비스들과 기록 보관을 포함할 수 있다. 보조는 주정부의 요구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농무부장관은 또한 산림자원 자료들의 수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기술 실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받았다. 의회는 이러한 규정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필요한 비용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이 법의 재원형성상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농무부장관은 주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연례의 재정지원 지급액을 통합할 수 있다.

#### 4) 기타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은 이 법의 이

행함에 있어서 농무부장관은 주정부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이 법하의 프로그램들은 관련된 프로그램들과의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한다. 농무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등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sup>6)</sup>

###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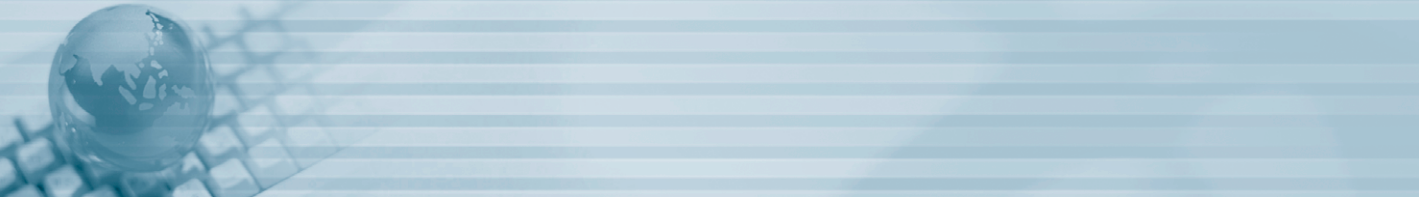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미국의 「CFAA」는 산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연방 산림지대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한 결과로 제정된 법으로서 국유림에 비해 활동범위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산림자원의 보존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산림의 관리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면서 아울러 그 결과의 도출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해서 한순간에도 수십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은 미의회는 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국유림이나 비국유림이나에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관리의 필요성은 차



6) USFS는 산림청매뉴얼(FSM) 1581.13이하에서 「CFAA」에 관련된 사항들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에 비해 비 국유림은 그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실한 관리를 행하기 쉽게 마련이다.

이는 산림의 관리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 가운데 상당부분 - 예를 들어, 맑은 공기, 좋은 경관, 기후 및 수자원의 조절 - 이 배제가능성이 적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게 되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임산물의 생산에 있어서도 투입된 자본의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가 일반적이고,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기대위험 역시 관리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보통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수익을 통한 완전한 비용의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주 정부 역시 국가에 비해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까닭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이른바 ‘시장의 실패’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요청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사유림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적절한 정부의 대응을 통해 산림자원의 전체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예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 주 영

(외국법제조사위원, 서울대 BK21 박사후과정연구원)